

의안번호	2217418
의 퇴 인	권향엽 의원
회 답 일	2026. 2. 11.
추계번호	26A0022
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2조의7제3항 (소상공인에 대한 보험료의 지원)	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본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정부가 소상공인을 대신하여 보험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	재량규정
2	안 제12조의10 신설 (보험료 자료제공의 요청 등)	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을 위하여 소득자료·국세·지방세·토지·건물·건강보험·국민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 받거나 관련 전산망을 이용하려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,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함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등 근거 규정
1	안 제12조의7제3항 (소상공인에 대한 보험료의 지원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12조의10 신설 (보험료 자료제공의 요청 등)	·미대상 -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지 않아 추계 대상에서 제외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국가로부터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본인의 동인을 얻은 경우 정부가 소상공인을 대신하여 보험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(안 제12조의7)으로 국가 재정지출 증가를 수반할 수 있음
 - 안 제12조의7에 따라 정부가 소상공인의 보험료 지원을 대신 신청할 경우 국가 예산을 통한 보험료 지원 대상이 현행보다 확대될 수 있으며, 이를 감안하면 국가 재정지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
 - 한편, 안 제12조의10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을 목적으로 관계 기관의 장의 협조를 요청하여 소득자료·국세·지방세·토지·건물·건강보험·국민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받거나 관련 전산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 업무수행 범위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추가적인 재정지출을 수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
 -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은 재정수반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「국회법」 제79조의2에 따른 비용추계서 첨부 대상 법률안에 해당하지 않음
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기존에 보험료 지원을 받지 않다가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될 소상공인의 규모와 보험료 지원 예산 소요액 등을 토대로 산출할 수 있으나, 개정안은 ①보험료 지원을 대신 신청할 수 있는 소상공인의 요건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요건을 알기 어렵고 ②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어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추가적인 재정 소요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
 - 개정안에 규정된 바와 같이 대통령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서 본인의 동의를 받아 정부가 보험료 지원을 대신 신청할 수 있는 소상공인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가정하는 데 한계가 있어 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음

- 참고로, 중소기업벤처부에 따르면 2024년 31,500명에 대해 고용보험료를 지원하여 112억 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26년에는 153억 1,200만원의 예산이 편성
 -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경우 법률상 보험료 지원 근거는 있으나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에는 관련 예산이 미편성된 상태
- 이에 개정안에 따라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의 보험료 지원을 국가가 대신 신청하는 데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장설희	김신애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장설희	02-6788-4654	shjang@assembly.go.kr